

#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의안 번호	2407
----------	------

제출연월일 : 2022. 1. .  
제출자 : 하남시장

###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 위탁예산 : 무상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의 교육비로 운영
- 현재 위탁단체 : 경기도옥외광고협회(회장 변중식)
  - 위탁기간 : 2019. 5. 1. ~ 2021. 4. 30. (3년간)

### □ 세부 추진계획

- 수탁단체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22. 5. 1. ~ 2025. 4. 30. (3년)
  - 모집대상 :
    - 경기도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단체·협회·법인 등
    - 50명 이상 인원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에 의한 교육(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

## □ 향후 추진계획

- 2022. 1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의회)
- 2022. 2월 : 모집 공고(신청 접수)
- 2022. 3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2022. 4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5월 : 민간위탁 실시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 「하남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최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부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또한,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교육은 불법 광고물의 양산을 막고 도시미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업무를 실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참고자료

- 관계법규 발췌서 1부
-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계획 1부. 끝.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3조에서 이동 <2011. 10. 10.>]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7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7조의2(선정방법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1.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1.1.12.>
  2. 민간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1.12.>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신설 2021.1.12.>
-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

1.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신설 2021.1.12.>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신설 2021.1.12.>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신설 2021.1.12.>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신설 2021.1.12.>
  5.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12.>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021.3.12.>